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 지원금 지급규정

2016년 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육성비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를 지급하는 선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격기준)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육성비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로 한다.

1. 전국체육대회 및 해당종목의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이 가능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수생활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선수
3.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4조(육성비의 구분 및 지급대상)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선수
2.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 출전하는 우수선수(실업팀 선수, 국군체육부대소속 선수, 경찰대학교에 복무중인 선수, 대학·일반부 통합종목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

제5조(대상자 선정)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대상자는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해 본회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 단, 경기단체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선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기준에 따라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경기력향상육성비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기간)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선수는 지급기간 중이라도 중지할 수 있다.

1.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시 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
2. 당해연도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한 선수
3. 향상을 위한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경기실적이 저조한 선수
4. 세종체육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8조(선수관리) 본회는 우수선수 경기력향상육성비 지급선수의 훈련점검 및 신상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 시행한다.

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육성비 지급기준

1. 고등부

(단위:원)

구분	지급기준	월지급액
1등급	- 2년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400,000
2등급	- 2년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개인득점이 100점 이상인 선수 - 1년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300,000
3등급	- 2년간 전국체육대회 개인종목에서 은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1년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200,000
4등급	- 2년간 전국체육대회에서 동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 1년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100,000

2. 대학부, 일반부

(단위:원)

구분	지급기준	월지급액
1등급	- 2년간 전국체전 300점이상 획득한 선수 중 본회가 특별히 인정이 되는 선수 - 2년간 전국체전 다관왕 - 국가대표	500,000
2등급	- 2년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 1년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400,000
3등급	- 2년간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1개이상 또는 개인득점 100점이상을 획득한 선수 - 1년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메달 2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300,000
4등급	- 2년간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1개이상 또는 50점이상 획득한 선수 - 1년간 각종 전국대회 개인종목에서 메달 1개 이상을 획득한 선수	200,000